

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

• 사전투표기간(3.31.~4.1.)과 선거일(4.5.)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,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(3.29.)부터 선거일 전 3일(4.2.)까지 인터넷 누리집, 사보,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*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| 전국 어디서나 **1390**

재·보궐선거 주요 일정

거소투표신고
3.14.(화)~3.18.(토)

후보자등록 신청
3.16.(목)~3.17.(금)

선거운동기간
3.23.(목)~4.4.(화)

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
3.26.(일)까지

사전투표
3.31.(금)~4.1.(토) 매일 오전 6시~오후 6시
*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: 4. 1.(토) 오후 6시 30분 ~ 오후 8시

선거일투표
4.5.(수) 오전 6시~오후 8시
*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선거일 투표시간 : 오후 8시 30분 ~ 오후 9시 30분



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재·보궐선거

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심는 날



선거일투표 4월 5일(수) 오전 6시~오후 8시

*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선거일 투표시간 : 오후 8시 30분 ~ 오후 9시 30분

사전투표 3월 31일(금) ~ 4월 1일(토) 매일 오전 6시~오후 6시

*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: 4월 1일(토) 오후 6시 30분 ~ 오후 8시

사전투표

선거일(4월 5일)에 투표할 수 없다면,
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

일시

3.31.(금) ~ 4.1.(토) 매일 오전 6시 ~ **오후 6시**

*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: 4. 1.(토) 오후 6시 30분 ~ 오후 8시

장소

재·보궐선거 실시지역 읍·면·동마다 설치된 **사전투표소**

* 중앙선관위 누리집(nec.go.kr)에서 확인 가능

준비물

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
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청소년증, 모바일 신분증(단, 화면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) 등

사전투표절차

관내선거인 |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 안에 설치된
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

-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(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)
- 2 투표용지 받음
-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,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
*개인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
- 4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

관외선거인 |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

-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(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)
- 2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받음
-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
*개인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
- 4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

선거일투표

선거일(4월 5일)에 투표하세요

일시

4.5.(수) 오전 6시 ~ **오후 8시**

*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선거일 투표시간 : 오후 8시 30분 ~ 오후 9시 30분

장소

주민등록지 내의 **지정된 투표소**

*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(nec.go.kr)에서 확인

준비물

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
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청소년증, 모바일 신분증(단, 화면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) 등

선거일투표절차

-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(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)
- 2 투표용지 받음
-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,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
*개인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
-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

투표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!

-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기
- 투표지 촬영 금지
*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
-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
-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

거소투표

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
병원·요양소·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

거소투표 대상자

-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
-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-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
-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·시·군*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

* 선거구가 해당 구·시·군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을 말함

신고기간

3.14.(화) ~ 3.18.(토)

신고방법

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 (읍·면·동 포함)의 장애인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구·시·군이 운영·개설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

*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누리집(nec.go.kr)에서도 출력 가능

